

## 가족자원경영 측면에서 본 건강가정육성

조 희 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되어, 보건복지상임위에 법안 상정과 국회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검토 중에 있다. 본 발표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성안하면서 본 법안이 최근의 다양한 가정문제와 가정 해체 위기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가정문제를 예방하며, 미래 가정 및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작금 우리사회의 가정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며, 또 가정이나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원천이며, 사회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바로 우리사회의 발전과 유지의 기본 축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체계이며, 가정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제 가족, 가정에 관한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눈앞에 다가온 복지사회로의 사회변화 속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가져야 하며, 또 그 체계 속에서 가정 및 가족구성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법안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가정의 기능강화와 가정의 잠재력 개발 및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을 통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을 건강가정 개념에 연결하여 소개하고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 I. 가족자원경영과 건강가정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건강가정의 특징과 건강가정 개념이 쓰인 역사를 파악한다. 그리고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1. 건강가정의 특징

유영주(1995)는 건강가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가정이 건강하다' 함은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정을 의미한다. 건강한 가정이란 서로 협동하고, 인내하고 타협해서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다져 가는 가정을 말한다. 즉, 가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족원이 대화 및 역할체계에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체계(공동체)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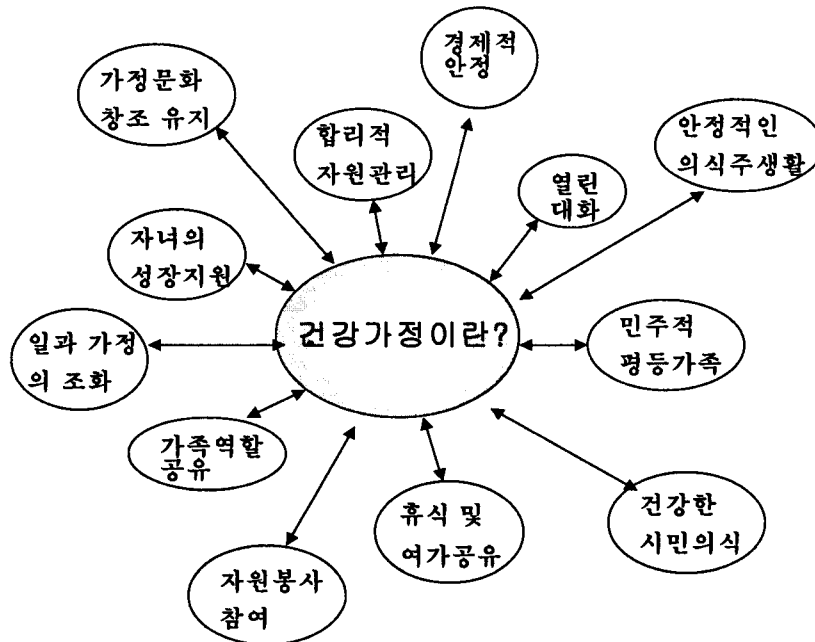
건강가정은 가족원의 성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며, 가족원간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가정을 말하며, 기능적인 가정으로서 가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외부 상황을 통제, 조절할 수 있으며 가족의 사회성을 격려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정의 건강성은 연속선상의 개념이며, 여러 요소가 복합된 매트릭스적 개념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은 단순히 건강한 가정과 불건강한 가정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건강가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리적 소비생활 및 가계수지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가계경제 운영
2. 가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가정경영 능력
3.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함
4. 균형적 식생활 관리를 통해 가족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킴
5. 가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6.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자녀간 서로 존중함
7. 가족원이 함께 질 높은 시간을 공유함
8. 가족의 역할을 융통성 있게 분담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
9. 가족원간 단합과 상호 협조를 중시함
10. 가족원 개인의 자립능력을 전제로 개성을 인정하며 서로 신뢰함
11. 가정의례를 존중하고 가정문화를 창조해나감
12. 사회봉사를 중요시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공유함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건강가정의 개념도



## 2. '건강가정' 개념의 학문적 역사

### 1) 미국에서의 건강가정

1960~1970년대 미국 사회의 이혼율이 절정(세계 제 1위로, 이혼율이 약 52.5%에 도달)에 달하면서 가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불안이 극도에 달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만연하던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가족정책에 주력하면서 가족해체 방지를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하여 가정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고 실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Nebraska 대학 Stinnett 연구팀에게 건강가정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 가족의 긍정적 측면과 가족의 장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유영주, 1995).

그 후 Laurence와 Barnhill(1981)에 의해 "healthy famil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인간 정신건강의 근원지가 가정이며, 병리적 현상은 가족의 기능 약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유영주, 1999, 96).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가족생활의 질이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건강한 가족생활 향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에 투자해 왔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건강가정 분야는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extension service program'으로써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 2) 한국에서의 건강가정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건강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가정의 개념부터 실증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술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건강가정을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운동 본부를 통해 실천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는, 그 때까지의 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가족문제 등 가족의 부정적인 측면과 병리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둔 것에 비해, 건강가정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다른 가족원들에게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개념들을 실제 연구와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그 최초의 시도가 유영주(1991)의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로, 이후 건강가정을 실제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실천의 의미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다. 한국의

건강가정에 대한 실증연구가 시작되면서 건강가정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1995년에는 ‘한국 건강가족 실천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건강가정 발전 방향을 위한 많은 학술세미나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전국민 건강가정 실태조사, 우리나라 건강가족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서병숙, 1994; 양순미·유영주, 2002; 어은주·유영주, 1995; 유영주, 1999).

건강가정에 관한 연구들은 건강가정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것으로 가족 내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로 삼음으로써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인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적 바탕에서 실천력을 가져야만 건강한 가정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 가정의 복지 증진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차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이다.

### 3. 가족자원경영 측면에서 본 건강가정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을 본 법안의 궁극적 목적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건강가정의 개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본 발표자는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가족자원경영은 목표지향적이며, 의도적인 활동이다. 둘째, 가족자원경영은 가정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활동을 중시한다. 셋째, 가족자원경영은 관리과정을 중시한다. 넷째, 가족자원경영은 중심활동은 자원관리활동이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족자원경영은 목표지향적이며,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가정경영은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창조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목적적 행동이다. 가정경영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적으로 이루어 가는 생활방식에 맞추어 의식적으로 행동한다(임정빈 외, 2002,23).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

이므로,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의 관건이 된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는 가정의 목표를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두고,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제4조) 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가족가치를 가지며(제7조),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제8조),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제9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의 목표지향적이고 의도적인 가정경영활동을 전제로 한다.

2) 가족자원경영은 가정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활동을 증시한다.

개별가정의 관리활동 결과는 사회 및 국가에 영향을 주고, 사회의 변화는 가정의 관리활동을 변화시킨다. 요컨대, 가정경영은 가정과 사회의 쌍방향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가정의 관점은 오늘날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개방체계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즉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 가족원의 가치관 및 노력 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는 개별가정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가정이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가정문제들은 이미 개별가정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것들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불어 가정도 가족원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가정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가정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가정과 사회의 상호작용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정문제에 접근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제5조)과 함께 가족원인 국민도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가정은 능동적인 자생력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쌍방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3) 가족자원경영은 관리과정을 중시한다.

가정경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조직, 수행,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중시한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및 평가하며(제16조),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제17조)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 통합과 문화 계승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8. 가족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4) 가족자원경영의 중심활동은 자원관리활동이다.

가정경영은 가족이 가진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물적자원, 인적자원, 환경자원 등)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이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할 것(제10조)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족원에게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제1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물질적, 심리적, 환경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이러한 지원에는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과 주거생활 안정 등의 물질적 지원과 가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 지원 등 신체적, 심리적 지원, 그리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 환경적 지원이 포함된다. 이는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정이 가진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5)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자원경영 전략

이상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을 개별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적용시켜 본다. 요컨대,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은 필수적이다.

첫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은 개별가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가정이 기능을 회복하고 잠재력을 강화할 수 없다. 가정과 사회의 상호작용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는 가정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가족원의 부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출산에 따르는 가족수당의 지급,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방법의 다양화, 방과 후아동보육시설의 확충,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시설의 확충 등은, 더 이상 여성이 가정 내 보호노동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기능 약화 및 가족의 해체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전략이다.

둘째, 삶의 질 향상 및 가정의 복지향상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인 가정경영을 할 때, 가정의 건강성은 증진된다. 가족원이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가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가정복지 향상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이 가진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정의 잠재력을 길러야 한다. 가정은 자생력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는 복지수혜자임과 동시에 복지를 공급하는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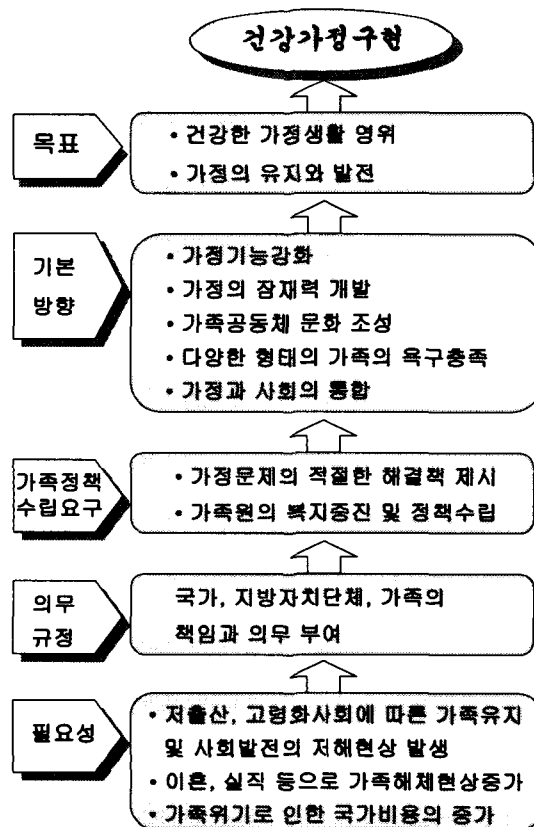
넷째,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증진하며 자원봉사활동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은 자립과 협동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다.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앞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 시행되게 되면, 가족자원경영의 측면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심도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 III.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건강육성기본법의 체계와 패러다임, 그리고 법 전문의 구성과 건강가정사업내용을 중

<그림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기본틀



심으로 한 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 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체계

<그림 2>에서 보듯이 기본법은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가정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과 정책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의 기본방향은 첫째, 가정기능강화, 둘째, 가정의 잠재력 개발, 셋째, 가족 공동체 문화의 조성, 넷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충족, 다섯째,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이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로 한다.

##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패러다임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가족들이 살고있는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유지와 발전의 주요 사회적 자본으로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가정 문제의 발생에 따르는 국가사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정민자, 2003, 2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희금, 2003, 25-28).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을 명시함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은 마을 내 이웃공동체나 친족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개별가정은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가정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고립된 채 이미 구조화된 사회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가정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게 되었다.

가정의 문제를 개별가정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별가정이 부담하는 자녀양육 및 노인 등 가

족부양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개별 가정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법에서는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제5조),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정을 지원하며(제21조), 가족해체 예방(제12조)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제8조), 자녀양육지원 강화(제22조), 가족부양의 지원(2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 2) 가정을 자생력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로 파악함

가정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가정 안에서 가족원간의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요컨대, 가정은 일방적인 국가나 사회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의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한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일방적인 개입차원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율성과 자립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게 일방적인 가족복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정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가정의 주체성과 능동적인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가의 비용이 낭비되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본 법에서는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가족문제 해결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의무를 가정에만 맡겨 놓지 않고 있다. 동시에 개별가정 스스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언급하여 개인·가정 그리고 국가와 사회 쌍방간의 상호작용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정을 일방적 수혜자로만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사회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과 출산(제8조), 가족해체예방(제9조)의 조항을 통해서도 복지의 주체로서 가정의 역할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및 책임과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을 능동적인 주체로 하면서 국가의 책임도 부과하는 쌍방향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3) 일반가정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

자원이 필요한 요보호 가정에 대해 제공되는 국가의 복지서비스 재원은 더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 스트레스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반가정에 대하여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반가정이 붕괴하지 않도록, 국가는 모든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붕괴로 예상되는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국가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맞는 가정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요보호 가정에 주어지던 복지서비스를 넘어서, 복지서비스를 일반가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가정을 위한 복지사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건강가정육성사업은 요보호 가정 및 일반가정을 포함하여 교육, 상담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서비스의 제공, 가정의 기능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중심의 통합적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본 법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가족뿐 아니라 가족원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이라는 생활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법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가족형태를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제3조).

###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지향

가정 내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세대간의 조화는 가정 건강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하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해결책 제시와 함께 전반적인 문화운동과 교육이 중요하며 생활 속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

본 법안에서는 가족원이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제7조), 이의 중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 확대를 규정(제26조)하고 있다. 또 일하는 여성의 직장과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함께 기업 및 사회의 가정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제21조),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제5조)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5) 가정문제에 관한 사전적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특히 한번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에 많은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들며, 완벽한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되돌리 수 있는 상태에서 가정문제를 해결 또는 치료함으로써, 가정의 건강성도 회복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사후치료적 방식은 가정 문제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의 건강성 회복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도 효익이 떨어진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가정문제 예방 및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문제발생 예방(제31조)과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교육(33조), 다양한 형태의 가정생활문화 발전(제28조), 가정의례(제29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제27조)의 강조 등은 가정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구성

이 법은 제7장 47조로 구성된 “기본법”이다. 무릇, 법이 사업법인가, 기본법인가에 따라 법안의 용어나 철학, 정책 기조 등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법 안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총칙에서 선언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본 기본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칙에서(제1조~제12조)는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예방, 지역사회자원 개발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날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은 건강가정육성정책의 장(제13조~제20조)으로 중앙 건강가정육성위원회, 시도 건강가정육성위원회, 건강가정육성의 기본계획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계획수립의 협조, 교육연구의 진흥, 가족실태조사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건강가정육성사업의 장(제21조~제35조)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부양지원,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역할, 가정생활문화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가정문제 발생

예방사업,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육성교육, 가정문제 종합상담, 자원봉사활동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한 것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 결과이다.

제4장은 건강가정육성전담조직 등(제36조~제39조)에 관한 장인데, 건강가정육성전담부서의 설치, 건강가정육성협회,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설치,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달체계가 제대로 살아 있어야 재정과 인력 수급, 행정적인 지원 속에 본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제5장은 건강가정육성 전담인력에 관한 장(제40조~제42조)으로 전담인력을 “건강가정지도사”라 명명하고, 건강가정지도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며 1급은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는 센터나 관련 기관은 건강가정지도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6장은 건강가정육성기금(제43조~제45조)에 관한 사항이다.

제7장은 보칙 조항(제46조~제47조)으로 보조금과 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가정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출산장려수당이나 양육(보육)수당, 부양수당, 가족수당 등은 조세감면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체 근로자 가정을 위한 다양한 건강사업들과 관련한 재정 등은 조세특례를 통해 간접지원 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시행령 작업 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4.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내용

다음에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내용을 용어정의와 건강가정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용어 정의

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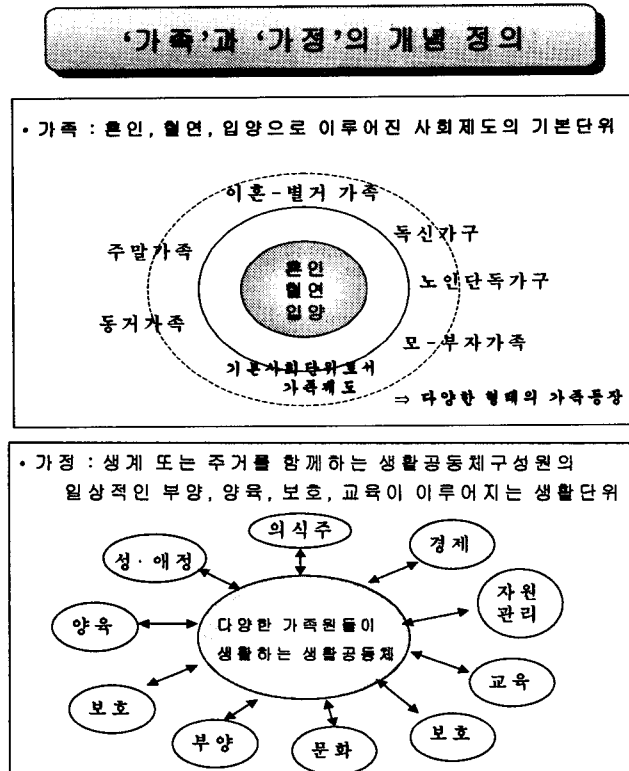
법 제 3조에서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이해

하고,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을 포함한다. 예컨대,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그룹홈,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가정이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본 기본법에서의 가정의 개념은 다양한 가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로서 의식주, 성·애정, 양육, 보호, 부양, 문화공유, 교육, 자원 관리, 경제 등의 기능을 공유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 가정을 의미한다.

<그림 3> 가족과 가정의 개념도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사업대상과 영역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빈곤가정과 위기가정(차상위보호계층), 일반가정 등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가정육성사업을 포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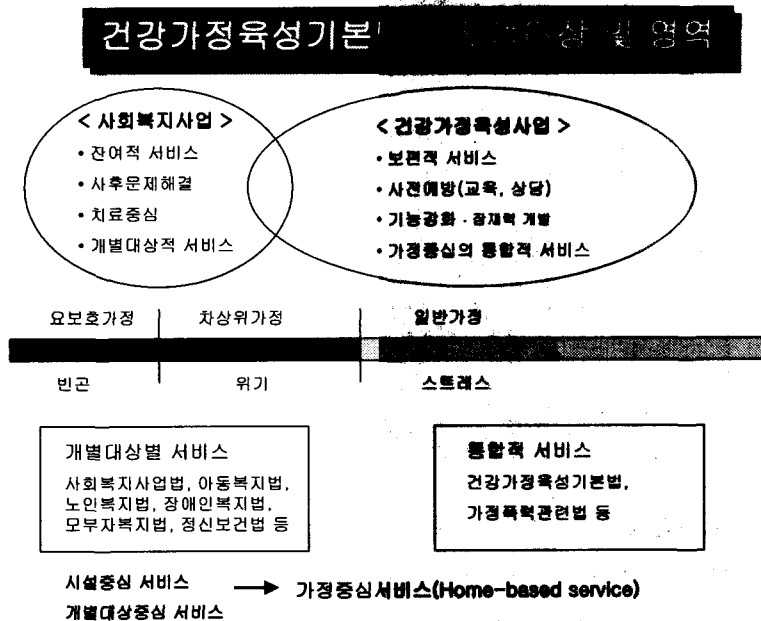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에서 해 온 가족복지사업은 잔여적 복지서비스로서, 사후문제해결중심, 치료중심사업, 개별 대상별 서비스(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인데 반해, 건강가정육성사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가정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서, 보편적인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사전예방사업으로 상담과 교육,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운동, 의식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법은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가정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미 규정된 경우에는 사업법을 통해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선언적 의미와 개발되어야 할 사업영역들을 주로 규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의례와 자원봉사의 참여, 시민의식 함양,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정생활문화발전, 건강가정생활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법 들을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지원의 범위를 넘어 공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는 가족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중심 과업(home based tasks)들을 개발하여 현재의 가정문제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4> 건강가정육성사업의 대상과 영역





### 3) 건강가정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본 법에서는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부터 제35조 까지 15영역에 걸쳐 주요 사업들을 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3) 안정된 주거생활
-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5) 직장과의 양립
- (6)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9) 기타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2. 자녀양육 지원 강화(제22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가족단위복지증진(제23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 연금, 생활보호 등 사회 보장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가족부양 지원(제25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적극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제26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및 해결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 및 가족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제27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형태의 가족에 대하여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원의 성장을 위해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가정생활문화 발전(제2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가정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가족여가문화
  - (2)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3)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4) 합리적인 소비문화
  - (5) 지역사회공동체 문화
  - (6) 기타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9. 건전한 가정의례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제29조)

- 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례, 제례, 장례, 성인례, 각종 축하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가정봉사원 양성 및 파견(제30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환자보호, 노인요양 등 가정생활에서 부족한 손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가정봉사원 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가정문제발생 예방(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12.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2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하여 이혼전의 상담기간 설정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 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건강가정 육성 교육(제33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결혼준비교육
  - (2) 부모교육
  -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14. 가정문제종합상담(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생활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5. 자원봉사활동 지원(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한다.

#### IV.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전달체계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효과적인 수행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본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와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지도사에 대해 살펴본다.

##### 1.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역할과 필요성

건강가정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심준섭, 2003),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하위단위로 내려갈수록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의 전담조직 및 인력으로는 심각한 가정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건강가정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육성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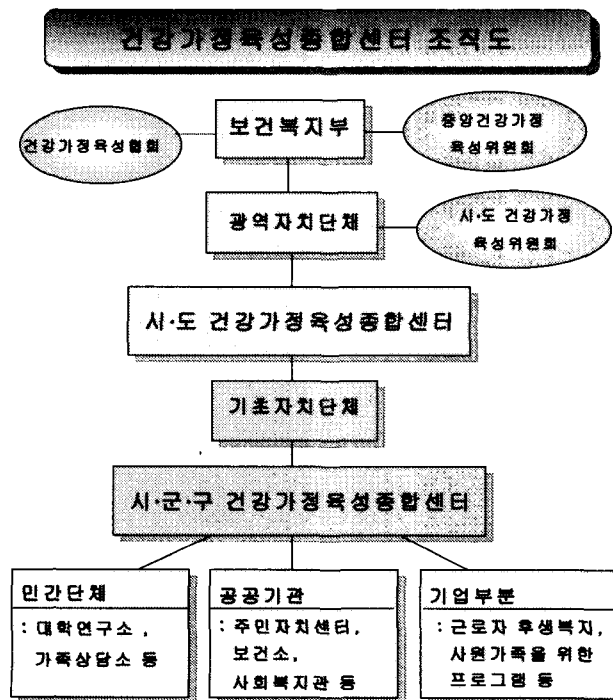
본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제36조),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

이와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해 일부에서는 낭비라고 비난하며 기존의 전달 체계인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기 위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센터의 설립은 낭비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라고 할 것이다. 특히 붕괴된 가정이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의 예방을 위한 전달체계의 정비에 드는 재원은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다.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역할은 가정문제발생의 예방과 치료(제31조, 32조), 건강가정육성교육(제33조), 가정생활문화발전(제28, 29조), 가정문제종합상담(제34조), 지역사회자원개발(제10조), 재가서비스사업(제30조),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38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제35조) 등이다.

건강가정육성센터의 조직도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조직



## 2. 건강가정지도사의 전문성과 차별성

전문화되고 분업화한 사회에는 각 분야마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복지도 문화와 결합되고 그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복지서비스 역시 전문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따라서 가정생활 문제의 해결과 가정의 건강성 증진 역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새로운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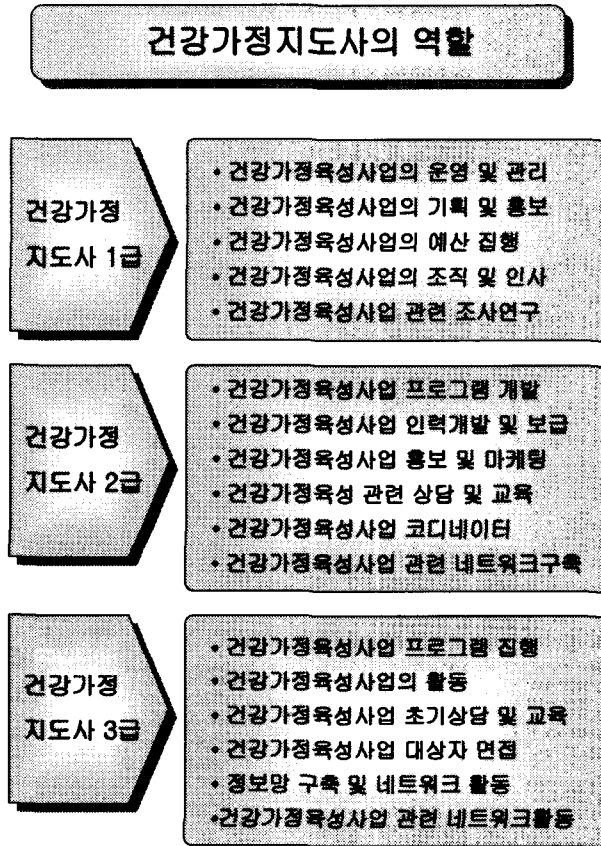
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그 본질은 ‘무엇을’ 제공하는가 이며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방법론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의 육성 지원·교육·상담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전문인력은 국가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법안에서는 건강가정의 육성지원·교육·상담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건강가정지도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제40조)하고 있으며, 1급의 자격증은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인 건강가정육성사업을 하려면 특히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된 인력들이 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문제의 상담과 예방 사업, 다양한 가정(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문화운동 등은 일정 연수로 단기간에 교육되는 부분이 아니다. 만일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전공이수자들이라도 국가시험 및 인턴십을 통해 전문가(specialist)로서 건강가정육성사업에 철저한 의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종사해야 할 것이다.

<그림 6>에서 건강가정지도사의 역할을 보면, 건강가정육성사업의 운영 및 관리, 기획 및 홍보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과 건강가정육성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및 보급,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2급, 그리고 건강가정육성사업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활동하는 3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6> 건강가정지도사의 역할



## V. 나오는 말

학회가 개최되는 2003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진다. 이 위원회의 통과가 이번에 법이 제정될 수 있는가의 최대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법의 제정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본 발표문을 작성하였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그 동안 가정학계에서 연구·축적해온 가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차체에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건강가정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정문제 발생의 원인

과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각종 가정생활교육, 가정문제종합상담 등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대한가정학회가정복지특별위원회·가정복지교수협의회(2002).『가정복지·발전종합계획안』. 미간행
- 서병숙(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2호. 275-279.
- 심준섭(2003).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지원하는 공청회』 자료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57-76.
- 양순미·유영주(2002).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69-81.
- 어은주·유영주.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1호. 145-156.
- 유영주(1991).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45-63.
- 유영주(1995).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공보처
- 유영주(1999).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3호. 93-102.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2002). 『가정관리학』. 서울: 도서출판신정
- 정민자(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입법방향과 내용.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지원하는 공청회』자료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15-36.
- 조희금(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1-31.